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기대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 1239 호

다. 발의일자 : 2020. 1. 2.

라. 회부일자 : 2020. 1. 13.

## 2. 제안이유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개 요

- 본 제정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 지진방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서울시 지진방재 관련 추진현황

- 시는 ‘16.6월 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중, ‘16.9월 경주, ‘17.11월 포항의 지진발생으로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하고, ‘18.4월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sup>1)</sup>을 보완함.
- 보완된 지진방재 종합계획에서는 ①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②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③ 조기 안정화를 위

1) <2016년-2020년>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보완) (상황대응과-4841, ‘18.4.2.)

한 대응·복구 체계 마련 이상 3개의 대과제를 정하여 각종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표] 참조).

[표] 2016-2020년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세부과제 현황

과제 1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추진부서
① 공공시설물 : 내진평가 시행 후 단계적 보강	
1-1 공공건축물	
① 서울시 직접소관 공공건축물	상 황 대 응 과 소 관 부 서
② 자치구 소관 공공건축물(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지원)	상 황 대 응 과 자 치 행 정 과
1-2 도시철도	교 통 정 책 과 서 울 교 통 공 사
1-3 도로시설	도 로 시 설 과 교 량 안 전 과 서 울 시 설 공 단
1-4 하수처리시설	물 재 생 시 설 과
② 학교시설 :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지원	교 육 정 책 과
③ 민간부문 : 내진보강 행·재정적 지원, 제도개선	
3-1 건축물 내진보강지원 제도개선 및 신규제도 건의	
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정부지원 건의	건 축 기 획 과
②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지방세 감면지원) 제도 운영	건 축 기 획 과 세 무 과
3-2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운영	
①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보완, 운영(버전 2.0)	건 축 기 획 과
②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건 축 기 획 과 시 설 안 전 과
3-3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생존공간 조성 지원	
① 필로티 등 취약건축물 내진성능 2차 실태조사	건 축 기 획 과
② 지진 대비 생존공간 조성 지원	건 축 기 획 과
과제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추진부서
① 지진안전센터(가칭) 설립 추진	안 전 총 관 과 상 황 대 응 과 서 울 기 술 연 구 원
② 지진선진도시 정책도입 및 지진방재 전문가 교류	상 황 대 응 과 국 제 교 류 담 당 관
③ 옥외 지진대피소 체계적 관리	상 황 대 응 과
④ 지진 대비 교육 훈련 강화	상 황 대 응 과
4-1 지진체험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①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내 지진체험시설 확충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②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운영	민방위담당관
<b>4-2 지진 대비 시민참여형 훈련 확대 실시</b>	
① 시·구민 참여 지진대피 훈련 실시	상황대응과 민방위담당관 홍무과
②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대응과
<b>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b>	상황대응과
<b>⑥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b>	상황대응과
<b>과제 3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체계 마련</b>	<b>추진부서</b>
<b>① 시민대피 및 조기 안정화 대책</b>	
1-1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2 임시주거시설 관리, 운영 강화	
① 실내구호용 칸막이 텐트 추가 확보	복지정책과
② 우리시 자체 조립형 구호주택 개발	복지정책과
③ 재해구호물품 및 창고 정비	복지정책과
④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관리	복지정책과
<b>② 주요재난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b>	상황대응과
<b>③ 지진재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b>	
3-1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상황대응과
3-2 재난상황실 구조물 및 전력, 통신설비 내진보강	상황대응과
① 재난상황실 구조물(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보강	자치구
② 재난상황실 내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자치구
3-3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2차년도)	상황대응과
3-4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평가단 구성, 운영	상황대응과 자치구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추진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각종 지진방재와 관련한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음.

## ■ 조례안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 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진방재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본 제정안에 사용되는 “지진재해” 및 “지진방재”에 대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인용하고 있음.
- 먼저,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3)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지진재해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 제9조의2제1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에 근거할 때 자치단체장은 행안부의 지진방재종합 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시행계획만 제출하면 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보다 효과적인 지진방재를 위해 현재 별도의 5개년 지진 방재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 여기서 행안부와 서울시의 종합계획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고, 서울시의 종합계획은 행안부 종합계획 중 자치단체에 부여된 계획을 모두 포함하면서 서울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항 즉, ‘지진안전센터(가칭) 설립 추진’ 등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행안부와 서울시의 지진방재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비교

<b>연차별 시행계획 세부과제</b> : 행정안전부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2019~2023년) 중 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 계획 세부과제(8개)	<b>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과제</b>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2016~2020년) 과제 별 세부 추진계획
- 효과적인 지진·지진해일 훈련 추진 - 지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 및 강화 -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 강화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1.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1) 공공시설물, 2) 학교시설물, 3) 민간건축물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1) 지진안전센터(가칭) 설립 추진 2) 지진선진도시 정책도입 및 지진방재 전문가 교류 3) 옥외지진대피소 체계적 관리 4) 지진 대비 교육·훈련 강화 5)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6)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포시제 활성화 3.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체계 마련 1) 시민대피 및 조기 안정화 대책 2) 주요재난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3) 지진재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

- 결과적으로, 안 제4조는 서울시가 현재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5년 단위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울시만의 종합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안 제4조의 지진방재종합계획 포함사항과 근거 법령

지진방재종합계획 포함사항	관계 법령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지진·화산재해대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제1항제3호, 제6항, 제7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지진·화산재해대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지진·화산재해대법」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 「지진·화산재해대법」 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5.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지진·화산재해대법」 제20조(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지진·화산재해대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지진방재사업(안 제5조)

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 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5조는 시장이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서울 기술연구원 산하 서울지진안전센터에 지진방재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지진방재사업을 수행할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와 관련하여 서울기술연구원은 ‘19.12월말 이사회를 개최해 지진 안전센터 신설을 확정하였고 ‘20.2월 현재 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다만, 현재는 조직체계상 소요인력을 다 갖추지 못한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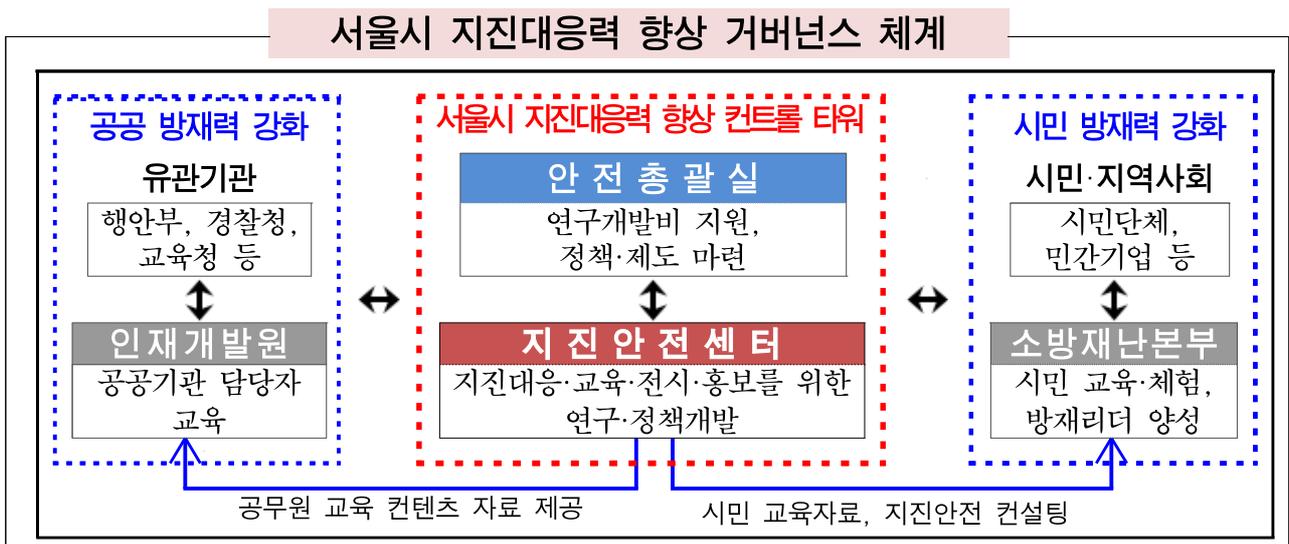
[표]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 조직운영방안(2020, 2021년)

연도	중점분야	사업내용
'20년~	공공 중심의 지진방재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분야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비 비상도로망 지정, 관리·운영 방안</li> <li>- 서울시 맞춤형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 등</li> </ul> </li> <li>○ 지진방재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 가이드라인 및 시나리오 개발</li> <li>- 공무원/시민용 지진방재 교육자료 개발 등</li> </ul> </li> <li>○ 지진방재협의체/자문단 구성(준비단계)</li> </ul>

'21년~	산·학·연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분야 협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물 저비용 내진성능 향상 기술</li> <li>- 저비용 지진가속도계측기 민간 확대보급 방안 등</li> </ul> </li> <li>○ 지진방재교육·훈련 콘텐츠 개발(계속)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방재교육·훈련자료 개발(※산업체로 확대)</li> <li>- 학교 지진방재교육 실시 및 자료 개선</li> </ul> </li> <li>○ 지진방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제도화</li> <li>○ 지진방재협의체/자문단 운영(활용단계)</li> </ul>
-------	----------------	--

- 따라서 안 제5조가 정한 각종 지진방재사업들이 전문연구기관인 지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만일의 지진재해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짐은 물론 성과물에 대한 현장 적용성 및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표] 서울시의 지진방재사업 추진체계(안)



- 다음으로,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전시, 홍보 등으로

지진방재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 이는 지진방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되며, 지금까지 서울시가 각종 인프라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대시민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범위 설정이라 사료됨.

## 5)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동 규정을 통해 서울시는 안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자문단을 활용하거나 서울시가 지진안전센터 등을 통해 시행하는 각종 지진방재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정성 등을 전문적 시각에서 점검하고 자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 ■ 기타(비용추계)

- 동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5조(지진방재사업)와 관련한 서울지진안전센터 운영비용이 연간 8억 5천만원이고, 안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와 관련한 지진방재자문단 운영비용이 연간 1천 7백만원으로 추계되어 연간 8억 6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다만, 안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와 관련한 비용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이 기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기인함.

## ■ 결론

- 그 동안 서울시는 지진방재와 관련하여 각종 인프라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왔던 반면, 대 시민 교육·훈련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방재사업들은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는 점에서,
-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 지진방재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환경구축이라 하겠음.
- 다만, 지금의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가 완전한 조직으로 구비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바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진안전센터 조직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행정안전부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19~2023)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세부과제(안)**

과제 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b>계</b>				
<b>I. 수요자 맞춤형 지진조기경보 체계 구축</b>				
1	지진 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행정안전부		중장기
2	지진가속도 계측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활용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중장기
3	소관 시설물(학교시설)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4	국가 지진 자료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반 조성	기상청	행정안전부	중장기
5	지진조기경보와 진동영향 정보의 정확도 개선	기상청		중장기
6	지진발생 현장 중심의 On-Site 경보 기법 연구	기상청		중장기
7	시설물별 가속도계측기 설치 .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단기, 중장기
<b>II. 긴급재난문자 등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b>				
8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방지	행정안전부		단기
9	중앙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10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고도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11	수요자 맞춤형 진도정보 서비스 추진	기상청		중장기
12	지진재난정보대국민전파체계고도화	기상청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중장기
<b>III. 맞춤형·체험형 지진 교육·훈련 실시</b>				
13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행정안전부		단기
14	지진 국민행동요령 개선 및 홍보 다양화	행정안전부		단기
15	효과적인 지진·지진해일 훈련 추진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단기
16	지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지자체	단기
17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 및 강화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단기
18	지진 재난현장 수습지원 체계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19	지진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행정안전부		중장기
20	지진체험시설 확충(안전체험관)	행정안전부		중장기
21	지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개선	경찰청		중장기
22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담조직 신설 추진	경찰청		중장기
23	지진 대피 교육·훈련 강화	교육부		중장기
24	지진 현상과 정보에 대한 이해도 증진	기상청		중장기
25	건축 문화재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비치	문화재청		단기
26	재난대응 행동요령 교육 추진	문화재청		중장기
27	국민행동요령 등 적극 홍보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28	지진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 추진	보건복지부		중장기
29	원전 배관 건전성 강화 및 안전교육장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30	시·도 특수사고 대응조직 강화	소방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중장기
<b>IV.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개선</b>				
31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지자체	중장기
32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지자체	단기
33	지능정보기술 기반 맞춤형 지진대응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중장기
34	지진해일 분석·예측체계 고도화	기상청		중장기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35	지진해일 대비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추진	산림청		중장기
36	원전관련 경주지진 대응 및 방재대책 재점검	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37	방파제 건설 등 해안방재 대책	해양수산부		중장기
<b>V. 내진보강 투자 확대 및 기간 단축</b>				
38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중장기
39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행정안전부	중앙, 공공기관	단기
40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중장기
41	정부종합청사 내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중장기
42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	경찰청		중장기
43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향상	고용노동부		중장기
44	소관시설물(공공청사) 내진보강	고용노동부		중장기
45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확대 및 내진보강 완료시기 단축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46	소관시설물(기타부처)내진보강	국방부		중장기
47	지진에 강한 국토 및 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중장기
48	SOC시설 내진보강 조기완료	국토교통부		중장기
49	시설물 내진기술 R&D 확대	국토교통부		중장기
50	농업 생산기반시설 내진보강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51	소관 시설물(문화재청) 내진보강	문화재청		중장기
52	목조문화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후전기시설 교체	문화재청		중장기
53	문화재 내진진단 프로세스 구축	문화재청		중장기
54	문화시설 등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중장기
55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활성화 대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중장기
56	소관 시설물(공공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내진보강 추진	보건복지부		중장기
57	땅밀림 현상 등 내진보강대책 마련	산림청		중장기
58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재설정 및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59	전력·가스시설 등 내진보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단기, 중장기
60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활성화 대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단기, 중장기
61	국가항만시설 내진보강	해양수산부		중장기
62	소관시설물(국가어항시설) 내진보강	해양수산부		중장기
63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재설정 및 개선	환경부	행정안전부	단기
64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	환경부		단기, 중장기
<b>VI.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b>				
65	내진보강 지원센터(가칭) 추진	행정안전부		단기, 중장기
66	내진보강사업 인센티브 확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단기
67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실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단기
68	건축물 감리제도 강화	국토교통부		단기, 중장기
69	처벌규정강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단기, 중장기
70	건축물 내진보강 강화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중장기
<b>VII. 이재민 회복 지원</b>				

과제 번호	과제명	소관부처	협조부처	비고
71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강화	행정안전부	지자체	단기
72	통합적 재난심리회복지원 법적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장기
73	재난심리지원과 공동체 회복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장기
74	의연금 배분체계 개선 및 모집 활성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75	통합 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76	국가 트라우마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중장기
<b>VIII. 지진 피해 지원 강화</b>				
77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국토부, 지자체	단기
78	학교시설 지진피해 공제회 지원 대상	교육부		중장기
<b>IX. 체계적 전국 활성단층 조사·연구</b>				
79	단층 조사·연구 강화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기정통부		중장기
80	국가지진위험지도 고도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81	지역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위험지도 표준모델 및 대응매뉴얼 개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장기
82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자료 통합관리체계 방안 제시	행정안전부		중장기
83	액상화 대응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중장기
84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기상청		중장기
85	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구축	문화재청		중장기
86	해양 활성단층 조사연구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중장기
<b>X. 지진방재 연구 및 국제협력 활성화</b>				
87	지진 선진국과의 국제교류 강화	행정안전부		중장기
88	국가 지진방재 R&D 로드맵 수립	행정안전부		중장기
89	건축문화재 시험연구 기반시설 구축 및 연구 추진	문화재청		중장기
90	지진분야 기초 R&D 확대	산림청		중장기